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03일

동백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하	최 *하 1970-08-17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 (동백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22
최 *하	오 *훈 1998-12-15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 (동백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22
최 *하	오 *민 1996-05-20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 (동백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22